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9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 송옥주·장철민·안호영

박영순 • 이원욱 • 양이원영

임종성 • 이성만 • 박홍근

이수진비) · 윤준병 · 양경숙

윤미향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필수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 등에 쉽게 노출되고, 고용 불안정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재난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안 제2조)
 - 1)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함.
 - 2)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여건 개선 노력 및 고충해결,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충 등을 하여야 함.

- 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7조 까지)
 -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2)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자치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 3) 위원회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 라.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1)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하고,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2) 지역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3) 지역별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 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 마.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역할(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평가 등을 하여야 함.
 - 3)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음.
 - 4)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 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나을 말한다.
 - 2. "필수업무"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 무를 말한다.
 -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방역 등 재난 대응 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 여건이 열악한 필수업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정 근무시간 보장과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 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확충 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업무의 지정)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 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 2.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시·도 위원회를,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 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서 시·군
 ·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소집) 제8조에 따른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해당 지역에 발생한 재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대규모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상항
 -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
 - 3. 필수업무별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1조(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종료된 경우 해당 필수업무 종사

- 자의 처우,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지원계획의 시행) 국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